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단 운영규정	문서번호	MSU-
		제정일자	2011. 4. 20.
		최종개정일자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의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운영규정」(이하 '사업운영규정'이라 한다)따라 설치한 목포과학대학교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학일체형 교육체제의 구축
2. 동남권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지원팀 운영
3.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경영지도
4. 공용장비 지원팀 설치 및 운영
5. 대학·기업 간 네트워킹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공
6. 지역 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및 공급
7. 그 밖에 사업단의 설립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3조(단장 및 부단장) ①사업단에 단장을 두며,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사업단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사업단에 부단장을 두고,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구성) ①사업단은 목포과학대학교(이하 "대학" 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5조(권한과 의무) ①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
4.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5. 사업결과의 보고, 성과의 활용
6. 총괄책임자(본교에 소속된 자)의 지정

②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사업의 공동수행 및 성과의 활용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
3. 사업 추진실적, 활용결과 보고에 대한 협조 등

③각 참여주체는 「사업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사업운영규정」 제24조에 따라 제재 및 정부출연금의 환수조치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귀책 대상기관 또는 귀책 대상자가 본 사업단에 입힌 손실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④「사업운영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단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협약 위반사유 해당 참여주체에서 정부출연금 반납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및 직무대행) ①사업단에는 인력양성팀, 기업맞춤교육팀, 중소기업지원팀, 공용장비지원팀, 녹색기술지원팀, 특성화전공운영팀, 전략사업부를 둔다.

②각 팀에는 팀장을, 부에는 부장을 두며, 팀장과 부장은 대학의 전임교원 중에서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단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 및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규정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산학협력전담교수 등) ①단장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학협력전담교수, 선임연구원 및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②산학협력전담교수, 선임연구원 및 전담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목포과학대학교 교원 등 인사에 관한 규정」과 「부속기관 등의 자체직원 인사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3장 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①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사업관련 분야의 산·관·연·학 전문가 중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업단 소재지 산업계 및 지방자치단체 인사가 위원의 60%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단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위원장이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2. 사업단의 예산 및 결산
3. 사업단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그 밖에 사업단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⑦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위원장이 임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제9조(실행위원회) ①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둔다.

② 실행위원회는 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사업단 인력양성팀, 기업맞춤교육팀, 중소기업지원팀, 공용장비지원팀, 녹색기술지원팀, 특성화전공운영팀, 전략사업부 등의 팀장 및 부장과 산학협력전담교수 등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단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실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도별 세부사업계획의 수립
2. 사업단 사업별 예산배정 및 결산
3. 사업단 신규사업계획의 수립
4. 사업단 소속 각 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서 등 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검토
6. 그 밖에 사업단의 효율적 실행에 필요한 사항

⑦ 실행위원회의 회의는 매주 1회 실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술개발과제선정 및 평가위원회) ①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술개발과제를 선정 및 평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과제선정 및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기술개발과제선정 및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행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1조(장비도입심의위원회) ①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도입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행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2조(산학협력협의회) ① 사업단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학협력협의회를 둔다.

② 산학협력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행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4장 회계 및 보고의무 등

제13조(재정) ① 사업단의 재정은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등) 등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확보된 재원은 각각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는 「사업운영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과제 책임자의 발의에 의해 사용한다.

제14조(회계) ① 회계업무는 정부의 예산회계법 및 그 밖에 관계법령과 정부운영지침에 따른다.

② 회계 관련 증빙서류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③ 회계연도는 본 사업단 협약연도와 같다.

④ 사업비의 관리와 회계는 「사업운영규정」 및 「관리운영지침」에 따른다.

제15조(보고의무) 단장은 사업의 해당단계(년도)에 사업의 중간결과보고서를 다음 단계(년도) 사업계획서와 함께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취득재산의 귀속) 사업단에서 취득하는 연구장비, 교육기자재, 실험실습장비 등(이하 '시설·장비'라 한다)에 대한 권리는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사업기간 및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로 시설·장비 등의 처분권은 정부에 속하고, 그 밖에 취득한 권리, 사용·수익·관리권은 해당 시설·장비의 취득사업비를 배정받은 대학이 소유한다.
2. 성과활용기간 이후에는 해당 시설·장비의 취득사업비를 배정받은 대학이 제1호에 따른 모든 권리를 가진다.

제5장 보 칙

제17조(기타 사항)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및 지식경제부의 사업운영규정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18조(기록관리)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록관리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